

『2021년 시니어 퇴직인력의 특허기반 기술창업지원』 시니어 예비 및 초기창업자 모집공고

시니어의 창업에 적합한 특허사업화패키지를 통해 성공적인 기술창업 실현을 지원하는 『2021년 시니어 퇴직인력의 특허기반 기술창업 지원』 사업에 참여할 예비 및 초기창업자(기업)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1년 4월 5일
특허청장

1. 사업 목적

- 시니어의 창업에 적합한 IP권리확보·제품사업화 계획·제품검증 등 특허사업화 패키지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기술창업 실현

2. 사업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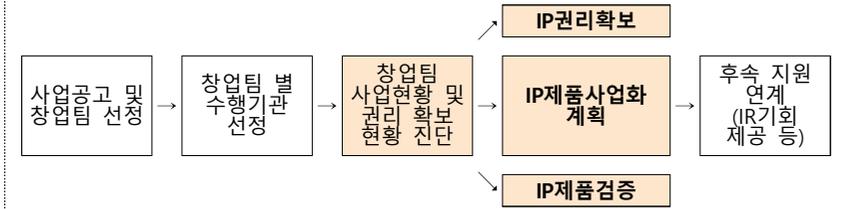
- (지원규모) 총 20개 창업팀 선정, 최대 50백만원 이내/팀 지원¹
 1. 사업비는 기업에 직접 지원되지 않으며, 수행사의 용역비 및 제반비용 등에 사용
- (지원내용) 시니어 창업팀에게 기술창업에 필요한 IP권리확보·제품사업화 계획·제품검증 등 ①특허사업화 패키지¹와 ②협업특화 지원²

지원트랙	지원건수	특허청 지원사항	협업특화 지원
중기부 협업형	10팀	특허사업화 패키지 (최대 40백만원)	● 중장년기술창업센터(25개) 창업교육, 입주공간, 전문가 멘토링, 시제품 제작 등
민간 협업형	10팀		● 은행권청년창업재단 투자검토(최대 3억원), 디캠프/프론트원 등 입주공간 가점 ● 중장년기술창업센터(25개) 입주공간 가점

1. 기업부담금(총 20%(현금 15%이상, 현물 5% 이하)), 부가세 포함, 특화 지원 포함
2. 중기부 협업형 과제의 경우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입주(졸업)기업, 실전창업과정 수료생 중 센터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협업특화 지원은 협업기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 특허사업화패키지 지원절차 및 지원내용 >

※ 지원절차 (수행기관을 별도 선발하여 지원)



※ 지원내용 (IP권리확보, IP제품사업화 계획, IP제품검증 각 세부과제 당 15백만원 이내 지원)

□ IP권리확보 지원

- (지원내용) 창업팀의 보유IP 및 사업아이템 분석을 통해 사업화를 위해 확보해야 할 추가 권리확보 전략을 수립하고 특허출원을 통한 권리확보 지원

창업팀 IP분석	• 수행기관이 창업팀의 보유IP와 사업아이템, 관련 시장 등을 분석하여 창업팀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권리 사항을 도출
IP 현황 조사분석	• 유사분야 IP현황 분석, 사업아이템과 보유 IP 분석 및 진단 • 분석 및 진단 결과에 따른 권리확보 방안 제시
권리확보지원	• 창업팀과 협의를 통해 권리확보 추진(특허출원, 최대 3건 이내)

□ IP제품사업화 계획

- (지원내용) 창업아이템이 실현된 제품(혹은 서비스)에 대한 시장전략 및 BM 분석 (시장 현황, 경쟁자, 제도 및 규제 등)이 담긴 제품사업화 계획서 작성 지원(기존 사업계획서 보완) 및 투자유치역량 향상을 위한 컨설팅 지원

제품·사업 계획안 검토	• 창업팀이 보유한 사업계획 및 제품계획안 검토를 통해 보완/개선할 점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제품 계획안 보완 대상범위 구체화
관련 시장 및 환경 조사·분석	• 유사분야 시장속성, 경쟁자, 규제 등 제한요소 분석 및 성장성 검토 • 이상적인 사업 추진과 기업성장을 위한 신규 BM/제품 기획
제품·사업 계획안 개선 및 컨설팅	• 창업팀과 협의를 통해 개선된 BM/제품 계획안 도출 • 계획안 도출시 IR전략을 포함

□ IP제품검증

- (지원내용) 창업아이템 관련 제품의 설계지원 및 동적 기능점검을 위한 IP제품검증 지원

제품 분석 및 구체화	• 창업아이템의 설계 요구사항 파악 및 검증 범위 구체화
IP기반 제품설계 및 제작방법 검토	• 창업아이템의 기본 설계 지원 • 효율적인 검증을 위한 제작 방법 검토
설계검증	• 제품의 동적 기능 점검 등을 위한 Mockup 등 제작 지원

○ (후속지원 사항) 투자유치설명회 및 IP성장사다리 제공

- (투자) 투자유치설명회를 통해 투자유치기회 제공

회 차	대 상	회 차	대 상
1	특허청-중기부 협업 창업팀	2	특허청-중기부 협업 창업팀
3	특허청-민간협업 창업팀	4	특허청-민간협업 창업팀

- (IP성장사다리) 특허청 IP지원사업*을 후속으로 연계 제공

※ 지원 사업별로 자부담이 상이함

구분	후속사업 연계(혜택)	구분	후속사업 연계(혜택)
창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IP디딤돌/나래(우선 지원 및 가점) IP스타트업 바우처(우선지원) IP스타트업경진대회(서면평가 면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SMART3(사용료감면 등) IP제품혁신(최대가점부여) IP사업화연계평가(가점부여)

3. 지원 대상

○ (신청자격) 창업아이템과 관련하여 숙련된 경험과 등록된 국내특허 1건 이상을 보유¹한 시니어² 창업팀(예비창업자 혹은 초기창업자)

- 공고 마감일(2021.4.30.)을 기준으로 등록된 특허를 보유하여야 함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 등록원부상의 최종권리자가 사업을 신청한 법인명의
 -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예비창업자 및 개인기업) : 등록원부상의 최종권리자가 신청기업의 대표자(혹은 신청인) 명의
- 시니어 기준은 공고일 기준 만 40세 이상인 자(예비창업자인 경우 본인, 초기창업자(기업)의 경우 기업의 대표가 시니어 기준에 충족해야 함)

< 예비창업자, 초기창업기업 세부요건 >

지원대상	세부요건
예비창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고일('21.4.5)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협약만료 1개월 전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 설립등기)이 가능한 자 폐업 경험이 있는 자는 이종업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5자리)를 기준으로 함(통계청 통계분류포털 참조) ** 동종의 경우, 3년(부도 및 파산은 2년) 후 인정(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참조)
초기창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1호 및 2호에 따른 창업기업으로서 공고일('21.4.5) 기준 창업 3년 이내인 창업자(기업) * 신청 전 자가진단 가능(창업기업확인시스템(https://cert.k-startup.go.kr))

※ 창업 관련 자가진단은 붙임5의 창업인정기준 자가진단표 참고

○ (신청 및 지원 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자(기업)
 - * 단, 신청마감일까지 신용회복위원회 프리.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환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 계획인가 받은 경우,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신청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 단, 신청마감일까지 체납처분유예승인을 받은 성실납세자, 국세·지방세 등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자는 신청가능
-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거나 예정인 자(기업))
 - * 일반유희주점업, 무도유희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 및 창업기업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가 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 창업아이템이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특허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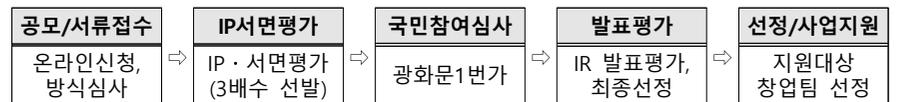
4.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1년 4월 5일(월) ~ 4월 30일(금) 18:00까지
- (신청방법)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www.kipa.org)
 - 홈페이지 내 '지원사업' > '특허기술거래평가' > '시니어 퇴직인력의 특허기반 기술창업 지원' 메뉴 내 '사업신청' 버튼 클릭

※ (제출서류) 사업참여 신청서(붙임2),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붙임3), 및 기타 증빙자료 (특허등록원부, 사업자등록증 사본(혹은 사실확인증명원) 및 각종 증빙자료 등)

5. 지원대상 창업팀 선정

- (선정 절차) IP서면평가·국민참여심사·발표평가를 통해 선정



- **(선정방법)** 사업운영위원회 개최를 통해 서면평가, 국민참여심사, 발표평가를 수행하고 서면(40), 국민참여(10), 발표(50) 합산 후 고득점 순으로 지원대상 창업팀 선정
 - **(서면평가지 동점자처리)** 서면평가를 통해 최종인원의 3배수를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되,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동점자는 전원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
(ex. 10개 팀의 3배수 = 30위 까지 선발시 30위~32위가 동점인 경우 해당동점자는 모두 30위인 것으로 간주)
 - **(종합점수 산정시 동점자처리)** 종합점수 산정 결과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평가유형별 배점이 높은 항목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며, 각 항목의 점수가 동일한 경우 지표별 배점이 높은 항목의 고득점 순으로 선별
- **(선정기준)** 지식재산 혁신성, 창업팀의 역량, 사업성, 시장성 등
< 예비창업자, 창업자 선정 평가항목 및 지표 >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지식재산 혁신성	창업아이템-특허 간 매칭도 : 창업팀이 보유한 특허와 BM의 매칭도	15
	권리확보 가능성 : IP권리성, 기술차별성, 디자인 참신성 등	15
	기술 혁신성 : 신사업 모방 가능성 및 경쟁사의 모방에 대한 극복성	10
사업성	상용화가능성 : 사업목표 및 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실현가능성 등	5
	사업 타당성 : 시장분석, 경쟁력 확보방안 등 창업아이템 성장가능성	10
시장성	시장 수요 : 자금 조달계획과 운용 적절성	10
	성장 가능성 :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전략 등 매출발생 구체성	10
창업역량	창업자 역량 : 창업자의 보유역량, 전문성, 기업이 정신 등	15
	팀 전문성 : 창업팀(팀원)의 경험 및 네트워크 등 보유역량	10
합계		100

- **(가점기준)** 가점인정 최대 5점

가점항목	가점
○ 대표자가 국가유공자인 경우,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3
○ D.Camp(은행권청년창업재단) 패밀리사 및 특허청 공동주관 D.Day 출전팀	5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를 통해 IP를 이전받은 기업	5

6. 사업 추진일정



※ 사업 세부일정은 아래와 같이 진행되며, 사업의 추진 현황 및 관리기관의 내부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니어 창업팀 모집 공고(21. 4. 5. ~ 4. 30.)
- 서면 및 국민참여심사(5월 초)
- 발표심사 및 창업팀 선정(5월 말)
- 사업수행기관 공고 및 선정(6월 ~ 7월 초)
- 특허사업화 패키지 추진(7월 ~ 11월)
- 최종결과 제출 (12월 초)

7. 사업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지식재산 창출 및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본 사업의 지원금을 부정사용하는 경우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 내용 중 허위사실 발견 시 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창업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특허청 및 협업기관의 지원사업에 3년 간 참여 불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합의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중복성 지수 60% 이상)로 선정된 경우,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사용하여 신청함으로써 판단하여 동일하게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은 중복지원에 대한 별도의 제한사항이 없으나, 타 지원 사업에서 중복지원을 금하는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 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선정취소, 창업지원사업 참여 제한, 정부지원금 환수, 채권추심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는 온라인에 직접 기입하는 양식과 붙임2의 양식을 모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미제출 시 서류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온라인 신청 전 제출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붙임1 참고)
- 신청내용 관련 증빙서류의 추가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발표평가 대상기업에 한하여 현장인터뷰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발표평가는 신청자가 직접 참여·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기업부담금 중 현금은 기업선정 안내 시 명시된 기간과 방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 시 선정이 취소됩니다.
- 기타 유의사항 및 참고사항은 FAQ(붙임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사업 문의

- **사업운영 관련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이재영 계장 (02-3459-2856, leeyj0317@kipa.org)
- **중기부 협업형 과제 추천서 문의**
 - 창업진흥원 배진현 주임 (044-410-1928, baezzq@kised.or.kr)

- 7 -

붙임1 제출 및 증빙서류 안내

구분	목 록	지원자 유형 별 제출여부			
		민간 협업형		중기부 협업형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사업 참여신청서	· 신청자, 창업아이템, 기술분야 등 일반현황과 세부정보 등 기재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사업계획서	· 창업아이템 요약, 기술혁신성, 사업성, 시장성, 창업역량 등 기재 - 요약(창업아이템 소개, 차별성, 사업성, 대표 이미지 등) - 기술혁신성, 사업성, 시장성, 창업역량 및 기타사항 작성(대회 수상 및 자금수혜 이력 등 기재) * 요약 포함 10페이지 이내로 작성(증빙 및 기타 추가 제출서류 제한 없음)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자격요건 증빙서류	· 대표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학생증 불가))	필수	필수	필수	필수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만) * 공고일 이후 발급서류	-	필수	-	필수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대표자 및 팀원의 사업자 등록 및 폐업 사실 여부 확인(직원 제외) ** 예비창업자팀이 '총사업자등록내역' 발급이 불가할 경우, '사업자등록사실여부(5년 이전증명 포함)'로 제출 가능 *** 발급절차 : 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사실증명	필수	필수	필수	필수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사업자등록사실이 없음을 확인	필수	-	필수	-
	· 특허 등록공보 및 사업공고일 이후 발급된 등록원부	필수	필수	필수	필수
	·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필수	필수	필수	필수
	· 중기부 중장년기술창업지원센터 추천서	-	-	필수	필수
	· 창업기업 확인서(발표평가시 제출)	-	필수	-	필수
기타참고자료	· 창업아이템 도면, 설계도 등 참고자료	선택	선택	선택	선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예비창업자(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예비창업자 및 팀원(팀원 있는 경우) · 창업기업의 대표자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대표자 및 담당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기업 법인기업인 경우)	필수	필수	필수	필수
가점 증빙서류	· 심사우대가점 부여 증빙서류	선택	선택	선택	선택

붙임2 **사업 참여신청서**

『시니어 퇴직인력의 기술창업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 안 내 사 항 >

1. 본 사업신청서는 「2021년 시니어 퇴직인력의 특허기반 기술창업 지원사업」 신청인의 선정평가에 있어서 지식재산·기술·연구역량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2. 세부항목 작성 시에는 작성요령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안내내용에 맞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하고자 하시는 사업 및 지원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제외,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허사업화패키지(요약)

과제구분	지원규모 (최대비용기간)	지원내용
IP권리확보 지원	40백만원, 4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아이템 분석, 창업팀 보유IP 및 창업아이템 관련 IP현황 조사 및 권리분석, 창업실현을 위한 권리확보 방안 및 권리화 지원 ● (결과물) IP분석보고서 및 권리확보 결과물 (특허출원 명세서 등)
IP기반 제품사업화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기반 제품의 사업화 실현을 위한 시장전략, BM분석(제품 현황, 경쟁자, 규제 등), 투자유치 IR 전략이 담긴 제품사업화 계획서 ● (결과물) IP기반 BM, IR 전략 등이 담긴 제품사업화전략 보고서(IR보고서 포함)
IP제품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의 시현 및 작동 여부 확인 등을 위한 IP제품검증 지원 ● (결과물) IP기반 제품 설계검증 결과물

1. IP권리확보 지원의 경우 창업팀 IP보유현황 분석 과제를 포함하며, 최대 3건의 권리확보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2. 과제별 지원규모는 창업팀과 수행기관의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1개 과제에 사용 가능한 최대 지원규모는 15백만원입니다.

신청개요

신청구분	<input type="checkbox"/> 예비창업자 / <input type="checkbox"/> 초기창업자(기업)				
지원트랙	<input type="checkbox"/> 민간협업형 / <input type="checkbox"/> 중기부협업형* <small>*중기부 협업형 과제는 중장년기술창업센터의 추천을 받은 자로 제한</small>				
창업분야	<input type="checkbox"/> 기계·소재 <input type="checkbox"/> 전기·전자 <input type="checkbox"/> 정보·통신 <input type="checkbox"/> 화학·섬유 <input type="checkbox"/> 바이오·의료·생명 <input type="checkbox"/> 에너지·자원 <input type="checkbox"/> 공예·디자인 <input type="checkbox"/> 기타 (분야 :)				
과제(창업아이템)명					
4차 산업혁명 기술분야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인공지능(AI) <input type="checkbox"/> 빅데이터 <input type="checkbox"/> 클라우드 <input type="checkbox"/> 차세대통신 <input type="checkbox"/> 사물인터넷 <input type="checkbox"/> 지능형로봇 <input type="checkbox"/> 지능형반도체 <input type="checkbox"/> 자율주행차 <input type="checkbox"/> 가상증강현실 <input type="checkbox"/> 스마트시티 <input type="checkbox"/> 드론 <input type="checkbox"/> 맞춤형헬스케어 <input type="checkbox"/> 혁신신약 <input type="checkbox"/> 첨단소재 <input type="checkbox"/> 신재생에너지 <input type="checkbox"/> 3D프린팅				
창업여부	<input type="checkbox"/> 미창업 <input type="checkbox"/> 개인(사업자등록번호 , 등록일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법인(법인등록번호 , 등록일 년 월 일)				
기업 소재지 <small>* 예비창업자(주거지)</small>	<input type="checkbox"/> 서울 <input type="checkbox"/> 인천 <input type="checkbox"/> 경기 <input type="checkbox"/> 강원 <input type="checkbox"/> 충북 <input type="checkbox"/> 충남 <input type="checkbox"/> 세종 <input type="checkbox"/> 대전 <input type="checkbox"/> 대구 <input type="checkbox"/> 경북 <input type="checkbox"/> 경남 <input type="checkbox"/> 울산 <input type="checkbox"/> 부산 <input type="checkbox"/> 전북 <input type="checkbox"/> 전남 <input type="checkbox"/> 광주 <input type="checkbox"/> 제주				
기본 정보	대표자	성명 : _____ 생년월일 : _____ 전화번호 : 자택 : () - / 휴대폰 : _____ 이메일 : _____ 주소 : _____			
	실무자	성명 : _____ 생년월일 : _____ 전화번호 : 자택 : () - / 휴대폰 : _____ 이메일 : _____ 주소 : _____			
	기업 정보 <small>* 창업자(기업)인 경우만 작성 (예비창업자 제외)</small>	기업명 : _____ 창업지역 : _____ 사업자등록번호 : _____ 주생산품 : _____ 법인등록번호 : _____ 홈페이지 : _____ 직원수 : _____ 전년도매출액 : _____ 전화번호 : _____ 팩스 : _____			
창업아이템 관련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small>(관련성 순 기재)</small>	번호	구분	지식재산권명	출원(등록)번호	최종권리자
	1	특허(등록)			
	2	실용신안(출원)			
	3				
2021년 월 일 신청인 : _____ (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붙임3 **사업계획서**

『시니어 퇴직인력의 기술창업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 ※ 사업계획서는 요약(1page) 포함 10page 이내로 작성(증빙서류 등 기타 추가 제출서류 제한 없음), '파란색 안내 문구'는 삭제하고 검정색 글씨로 작성하여 제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양식 변경 금지(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공란유지)하며, 필요시 사진(이미지) 또는 표 추가 가능
- ※ 사업계획서는 요약(1page)은 '국민참여심사' 자료로 활용 예정(추후 별도 동의여부를 확인)

창업아이템명	
--------	--

사업계획서(요약)

창업아이템의 소개	· · ·
창업아이템의 차별성	· · ·
대표 지식재산권 (창업아이템 관련성 기재)	· ·
창업아이템의 사업성	· · ·

대표 이미지

* 이미지 시안 또는 설계도

1. 지식재산 혁신성

1-1. 창업아이템의 개발동기 및 목적(필요성)

- ※ 개발(보유)하고 있는 창업아이템에 대한 개발동기 등을 기재
- ※ 제품(서비스)을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 국내·외 시장(사회·경제·기술)의 문제점을 혁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을 기재

○ (개발동기)

-
-

○ (필요성)

-

1-2 지식재산 차별성 및 모방회피, 기술 완성도 등(혁신성)

- ※ 특허 등 기술의 핵심기능 위주로 기재, 종래기술 해결과제, 경제성, 수율 등 차별성, 경쟁사 및 유사아이템의 모방에 대한 극복 가능한지, 지식재산권 행사가 용이한지, 디자인 참신성, 기술완성 수준 등 기재

○ (차별성)

-

< 보유 지식재산과 창업아이템 관련성 >

지식재산 보유현황(창업 아이템과 관련된 등록된 권리만 기재)				
순번	등록번호	국가	명칭	기여비중(%)
1	0000000	KR		100%
2	0000000	US		80%
...				

○ (완성도)

-

기술 및 사업아이템 이미지	개발단계: <input type="checkbox"/> 아이디어단계 <input type="checkbox"/> 연구개발 <input type="checkbox"/> 시제품제작완료 <input type="checkbox"/> 제품화완료 <input type="checkbox"/> 양산준비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 (이미지) 또는 설계도 삽입 < 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설명 >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 (이미지) 또는 설계도 삽입 < 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설명 >

2. 사업성

2-1. 창업아이템의 사업화전략

※ 비즈니스 모델(BM) 및 제품(서비스) 구현정도, 제작 소요기간 및 방법(자재, 외주), 추진일정 등 사업 전체 로드맵 등을 기재

-
-
-
-

< 사업 추진일정 >

추진내용	추진기간	세부내용
제품보완, 신제품 출시	2019.0.0. ~ 2019.0.0.	OO 기능 보완, 신제품 출시
홈페이지 제작	2019.0.0. ~ 2019.0.0.	홍보용 홈페이지 제작
글로벌 진출	2019.0.0. ~ 2019.0.0.	베트남 OO업체 계약체결
투자유치 등	2019.0.0. ~ 2019.0.0.	VC, AC 등
...		

2-2. 창업아이템의 시장분석 및 경쟁력 확보방안

※ 기능·효용·성분·디자인 등의 측면에서 현재 시장에서의 대체재(경쟁사) 대비 우위요소, 차별화 전략 등을 기재

-
-
-
-
-

2-3. 실제 사업시 장애요인 분석

규제사항 존재 여부	규제대응 전략
<input type="checkbox"/> 규제사항 존재 <input type="checkbox"/> 규제사항 없음 <small>(해당 사업아이템 인증 및 인허가 필수 여부해당 시 체크)</small>	※ 규제 사항 존재 시 규제 및 인증 인허가 내용 기재

3. 시장성

3-1. 자금 조달계획

※ 자금의 필요성, 필요자금의 조달계획 기재(아래 항목 중 선택하여 작성)
 - 엔젤투자, VC(벤처캐피탈), 크라우드 펀딩 등의 투자처, 향후 투자유치 추진전략 및 방법 등 기재
 - 인수합병(M&A)을 통한 사업확장 또는 출구전략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기재
 - 기업의 경쟁력 강화, 투자자금 회수 등을 위한 기업공개(IPO) 중장기 전략을 기재
 - R&D, 정책자금 등 정부지원금을 통한 자금 확보전략 등

-
-

3-2.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 내수/해외시장시장에 대한 주 소비자층, 주 타겟시장, 진출시기, 시장진출 및 판매 전략, 그간 실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3-2-1. 내수시장 확보 방안 (경쟁 및 판매가능성)

-
-
- 내수시장 진출 실적 ※ 관련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유통채널명	진출시기	판매 아이템	판매금액
OO	2020.2.14.~2020.2.22.		000백만원
...			

3-2-2. 해외시장 진출 방안 (경쟁 및 판매가능성)

-
-
- 글로벌 진출 실적 및 역량 ※ 관련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수출국가수	수출액	수출품목수	수출품목명
OO개국	000백만원	OO개	000, 000, 000
...			

해외 지식재산권 건수(출원 제외)	국제인증 건수	국제협약체결 건수(MOU, NDA 등)
등록번호	OO건	OO건

4. 창업역량

4-1. 대표자·팀원의 보유역량

○ 대표자 현황 및 역량

※ 창업아이템(제품 및 서비스)과 관련하여 대표자가 보유하고 있는 이력, 역량(전문성), 동종업계 경험, 창업/투자관련 주요사항 등 기재

-
-

○ 창업팀 현황 및 역량 ※ 팀원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사업 추진에 따른 현재 고용인원(미고용 팀원) 및 향후 고용계획 등을 기재

* 직급이 없는 경우 팀원으로 기재

-
-

순번	직급	성명	담당업무(전공)	주요경력 및 학력	동종업계근무경력
1	CEO	OOO	S/W 개발	컴퓨터공학과 교수	10년 2개월
2	CSO		해외 영업(베트남, 인도네시아)	OO기업 해외영업 경력 8년	
...	CTO		R&D	OO연구원 경력 10년	
...					

5. 기타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기술개발자금 및 창업지원자금 등 모두 기록
 ※ 타 창업경진대회 수상경력 여부 기재

5. 수상 및 자금수혜 이력 사항

5-1. 대회수상

수상일	수상자	대회명	아이템명	주최기관	훈격	상금(천원)

5-2. 자금수혜

수혜자	사업명	아이템명	지원기관	지원기간	지원금액(천원)

자격요건 증빙서류 (공통)

증빙서류(공통) 삽입 (페이지 추가 가능)

- **대표자 신분증 사본 (필수)**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필수)**
 - * 대표자의 사업자 등록 및 폐업 사실 여부 확인(직원 제외)
 - ** 예비창업자(팀)이 '총사업자등록내역' 발급이 불가할 경우,
'사업자등록사실여부(5년 이전증명 포함)'로 제출 가능
 - *** 발급절차 : 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사실증명
- **지식재산권 등록공보 및
사업공고일 이후 발급된 등록원부 (필수)**
-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등 (필수)**
- **중기부 중장년기술창업지원센터 추천서(중기부 협업과제 필수)**
- **심사우대가점 부여 증빙서류 (해당자)**

* 본 사업계획서 작성 내용과 증빙자료 상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거나 누락, 허위 기재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특허청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하고 있거나 폐업한 경험이 있는 경우, 공고문 '창업인정 기준'에 따라 해당되는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

예비창업자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증빙서류 삽입 (페이지 추가 가능)

- **사실증명원(사업자등록사실여부) (필수)**

* 본 사업계획서 작성 내용과 증빙자료 상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거나 누락, 허위 기재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특허청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기 창업자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증빙서류 삽입

(페이지 추가 가능)

- 사업자등록증명원 혹은 사업자등록증(필수)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해당자만)

* 본 사업계획서 작성 내용과 증빙자료 상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거나 누락, 허위 기재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특허청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하고 있거나 폐업한 경험이 있는 경우, 공고문 '창업인정 기준'에 따라 해당되는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

기타 참고자료 (해당자에 한함)

증빙서류 삽입

(페이지 추가 가능)

- 창업아이템 도면, 설계도 등 참고자료 삽입

* 본 사업계획서 작성 내용과 증빙자료 상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거나 누락, 허위 기재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특허청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II. 사업 신청 및 운영관련

Q 2-1 온라인 신청 시 제출해야할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A 2-1 신청기업은 ① 사업신청서, ② 기업부담금 납부동의서 및 현물납부 약약서, ③ 기업 및 개인정보의 제공·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④ 참가자격 증빙자료 및 기타 가점 관련 증빙자료를 온라인으로 등록해 해주셔야합니다.

Q 2-2 제출 증빙자료 중 '등록원부'는 무엇인가요?

A 2-2 등록원부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권리 관계를 표시한 서류입니다. 지식재산권의 최종권리권자를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여야하는 서류로, 특허청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발급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붙임5 창업 인정기준 자가진단표

□ 창업여부 기준

신청기업 구분		상세 구분		개정 시행령 (20.10.8.)	
상속/중여	공통 (개인,법인)	동종업종 유지		창업아님	
		이종업종 창업 (또는 신규 법인설립)		창업	
창업이력 없음	공통 (개인,법인)	-		창업	
		개인기업	법인기업		
창업이력 있음	개인기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업
				폐업 3년 초과	창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동종창업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법인기업	자회사 여부	법인 주주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0%이상+최대주주	창업아님	
		조직변경	동종업종 유지	창업아님	
			이종업종 변경	창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업
			동종창업	동일인인 경우 발행주식 30% 이내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업아님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업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업		
	동종창업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업		
기존 법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업		
	동종창업	-	창업		

□ 관련법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중여 받아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다만,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법인인 중소기업은 제외한다)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이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해당 법인과 그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